

행 정 자 치 부

통 보

제 목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강원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지정된 출장기일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 ○○○○○에서는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장비 등 구매 T/F팀 구성을 위해 강원도 ○○소방서 지방○○○ ○○○에 대한(2015. 3. 2.~2015. 3. 31.)협조를 요청(○○○○○-○○○○, 2015. 2. 27.)받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출장을 지시하였으며, 위 ○○소방서 ○○○ ○○○은 국민안전처 ○○○○○○에서 소방자동차 표준규격 개정 등 업무를, 위 ○○소방서 ○○○은 국민안전처 ○○○○○에서 ○○○○센터 근무를 2월 11일, 1월 28일 각각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방본부 지방○○○ ○○○은 2015. 3. 2.부터 2015. 3. 31까지 28일의 기간 동안 국민안전처 ○○○○○에서 소방장비 구매 T/F를

추진하였고, ○○소방서 지방○○○ ○○○은 2015. 5. 18.부터 2015. 7. 29까지 2개월 11일 기간 동안 국민안전처 ○○○○○○○에서 소방자동차 표준규격 개정을 추진하였고, ○○소방서 지방○○○ ○○○은 2015. 7. 3.부터 2015. 8. 31까지 1개월 28일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 근무를 하게 하였다.

강원도(○○○○○○)에서는 국민안전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국민안전처의 현안업무 처리지원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출장을 명령하였다고 하나

타 기관의 업무폭주 등으로 인한 행정지원 등을 위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2개월 11일이라는 기간 동안 출장을 명령하여 국민안전처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부 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강원도 공무원 복무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